

식품위생법 관련규제 완화에 관한 규제개혁위원회 검토 최종결과

박 길 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적용은 편익분석을 통한 평가와 법적인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국제적인 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한 결과입니다. 충분한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가져야 하여야 하였음에 불구하고 단 시간내에 결정하여진 것은 다소 유감이지만 위원회와 관련부처 담당공무원들과의 논의의 결정에 의한 결과이며 국회에 상정 심의 결정되는 것입니다. 전문성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하여 신설, 강화되는 새로운 규정에 반영하고 새로운 규정은 충분한 편익 분석에 의한 평가하에서 도입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문을 기고 합니다.

1. 서 론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은 1962년에 법률1007호로 제정 공포된 이래 수차례 걸쳐 개정되어왔으며 현재의 식품위생법은 1986년에 전문개정을 근간으로 한 부분적인 개정이 수차례 걸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식품에 관련되는 법으로서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시, 예규, 지침, 훈령 등의 내규가 있다. 식품위생법은 80개의 관련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은 54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시행규칙은 5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 총 194개의 조항

과 부칙을 가진다.

식품위생법은 국민의 건강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들로서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성이 매우 높아 사회적인 반응성도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생활하기 편한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와 민간인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고 모든 법률의 재검토와 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관련법에 의한 규제는 총 129건으로 폐지 57건 개선 32건 존치 40건으로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 최종 확정하였다. 최종의 결과는 국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

지만 거의 원안대로 확정 될 것이다.

이러한 정비의 기본적인 방향은 식품위생영업에 대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사업진입 기준, 시설 영업 운영기준 등 객관적 구체적 규정이 없어 투명성이 없는 규제와 국제적인 기준규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규제, 그리고 보건위생의 안전 확보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규제는 비용편익과 함께 국민의 정서등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정비를 하였다.

2. 주요 규제 개혁 내용

식품 중 인삼 제품류와 식품첨가물인 보존료 및 타르색소는 유용성과 안전성의 확보는 물론 저질 품 유통차단을 통한 국제적 신인도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제품검사를 받도록 하고 제품검사 합격증지 부착을 하도록 하였으나 제품검사 수수료 부담 증가, 검사기간 소요에 따른 적시 출하 및 물류비용의 증가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되어 웃음으로 인삼 제품 및 식품 첨가물중 보존료와 타르색소의 사전검사를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와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거검사 강화 그리고 자가품질 검사 등을 통한 생산·공급의 원활화 및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집단 식중독 등의 발생 예방과 식품의 과학적인 조리로 국민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복어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 식품 접객업종 허가면적이 120 평방미터 이상인 업소, 상시 1회 50인 이상의 집단 급식소등에 조리사와 영양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리사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영업자의 부담증가와 조리사의 의무 고용제에 따른 영업자의 자율성을 상실하게 됨으로서 조리사 인력의 활용에 제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사업장의 상시 1회 급식 인원 50인 이상의 집단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의무 고용 하도록 정함으로서 중소기업의 부담과 업체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음으로 영양사의 고용은 근로자 후생복지 차원에서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고용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식품 접

객업종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업소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 조리사 의무 고용제를 폐지하고 업소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리사를 채용하도록 하며 국민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하여서는 식품 접객업소 감시활동 강화를 통한 조리사의 채용을 유도하고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영양사의 의무 고용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업체의 후생 복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취약 계층의 집단 급식소는 특별한 영양관리를 위하여 존치하고 일시적인 여성의 실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0년까지 유보하도록 개선하였다.

식품 접객업의 폐폐·변태 영업 방지 및 예방과 소비억제를 통한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 관리함으로서 형평성의 문제와 과도한 단속 등을 통한 공무원 비리유발이 되고 있음(서울시 등 11개 시도 24:00, 부산, 인천 등 4개 도시 02:00)으로 시·도별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따라 식품 접객업 영업시간을 정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시간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하여 영업자의 책임 강화와 영업자와의 유착 방지 등 비리 유발 요인을 사전 제거도록 하였다.

식품등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의 위생 안전 관리를 위해 자가품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실이 없거나 자가품질검사 능력이 없는 업소는 국가 공인검사기관 또는 동업자조합 공동 검사실에 위탁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자의 부담증가와 단속과정에서 부조리 소지 제공과 실효성이 매우 낮음으로 검사실 설치 제외 대상업소와 위생상 위해성이 낮은 품목을 대상으로 자가 품질검사를 면제하여 영세업자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자율성을 제고하며 단속 공무원 등의 비리 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개선하였다. 식품 등의 유통·판매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식품선택 정보제공을 위하여 식품의 유형마다 유통기한을 획일적으로 설정 관리하므로써 품질경쟁의 억제, 경과 제품의 과다 발생 등에 의한 자원낭비(약9,300억 원), 국제적인 통상마찰 그리고 유통기한 설정은 각

국마다 제조업체의 자율설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업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임으로 식품 유형마다 획일적으로 식품공전에 정하고 있는 빵 등 66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폐지하고 유통기한 설정방법을 제시하여 업체가 자율적으로 유통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유통판매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및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적용 사업장의 확대 그리고 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도록 개선하였다.

2.1 공중 위생법 관련 규제

위생접객업, 위생관리영업, 위생용품제조업 그리고 공중 이용 시설 등에 대한 시설 및 운영 그리고 위생관리를 위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영업자의 신고 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어 업소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보건위생에 기여도가 매우 낮으며 비리의 온상이 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았으며 위생 접객업자 및 위생관련업자는 위생관리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중 이용 시설의 소유자 등은 년2회 이상의 정밀 검사와 위생관리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으로써 업소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공중위생업소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공중 위생업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하도록 의무를 폐지하여 자율 업종으로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의 협조를 얻어 현황파악, 관리토록하며 공중위생 관리업소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준수 사항 등 업소에 자율성과 부담이 가는 규제는 폐지하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 등급 공표제 및 위생서비스 평가제 등의 도입을 통한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공중 위생업소(이용업소)에서의 시설 및 설비기준 폐지로 윤락·음란행위 등의 퇴폐 행위 증가 우려가 있으나 풍속에 관한 법률 및 윤락 행위 방지법 등으로 제재하여 시장 진입 및 자율성이 확보 되도록 하였다.

3. 규제개혁의 세부 내용

3.1 식품위생법에서 폐지되는 규제

식품영업자 동업조합 임원의 개선명령(식품위생법 제47조)은 존치를 필요로 하였으나 정부의 개입타당성이 미약함으로 폐지하고 식품영업자 '동업자' 조합의 자율 지도원 자격기준 설정(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있어서 자격기준은 조합에 위임하여 불필요한 정부개입을 방지하도록 폐지하였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증 이면 기재사항(시설 배치도, 변경 및 처분사항 시행규칙 22조 3항, 별지 14호 서식, 품목제조보고서식에 유통기한의 기재 및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의 첨부를 폐지하여 영업자의 절차상의 불편과 불투명한 서류의 제출 등으로 부조리의 요인을 제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리사 및 영양사의 의무고용(법 제34조, 법 35조, 시행령 18조, 19조, 시행규칙 44조, 45조)은 복 취급업소와 취약집단의 영양관리 필요성이 있는 곳에만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기타 집단급식소 등에 대하여서는 의무고용을 폐지하고 업체의 자율에 의한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영양사면허증의 말소 신청(영양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의5호 차목)은 혐오감을 주는 식품(보신탕 등)의 판매금지 등 규제의 실효성이 없음으로 폐지하고 식품연질캡셀 성형위탁업소 지정규정(시행규칙20조, 별표 9의1자(2))은 시설이 갖추어진 업소에서만 가능함으로 지정은 불필요하다.

건강보조식품판매업의 신고(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7조), 건강보조식품 취급약사에 대한 위생교육(식품위생법 27조, 규칙 제37조) 농산물의 수입시 농약 등의 녹색신고제도(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1조의3)등은 법의 실효성이 낮고 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폐지하였다. 금치산자 및 파산신고를 받은자에 대한 영업 허가 제한(법 제 24조).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자 등에 대한 영업허가 제한(법 제24조), 식품제조 및 접객영업 허가시 내부신원조회(법 제24조 별지 13호 서식)등은 생존권의 침해 우려가 있음으로 폐지하고 가족·친지 등의 명의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품위생관리인의 의무고용(식품위생법 제28조, 시행령 15조, 16조, 17조)폐지로 식품위생관리인의 관리 의무(식품위생법 28조 제2항), 식품위생 관리인의 업무방해금지 및 협조(28조3항), 식품위생관리인의 선임(해임)신고(법 28조4항), 식품위생관리인 이중 선임제한(규칙 제42조, 별표13)의 관련조항이 폐지되어 업체의 자율성과 책임이 높아졌다.

영업자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부조리의 요인이 되며 실효성이 낮고 불투명한 규제인 영업시설 이용의 거부금지(식품위생법 33조),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시설개수 명령(법57조 3항 영 제35조),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제한(법 제30조 및 영 제53조), 식품관련영업의 휴업 신고(법 제22조 4항, 규칙 29조)등과 식품진흥기금과 관련된 조항은 식품진흥기금을 취급하는 지정금융기관의 자금융자 상황 보고(법 제71조, 영 42조 - 51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금리 등 제한, 식품진흥기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기간 제한(영47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 제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 용도제한,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이 되는 과정 금의 납입기한 등을 폐지하였다.

식품위생법 제29조 제1항 및 시행규칙 40조, 별표12에 의한 청량음료 제조업자의 공병보증금 환불표시 의무, 청량음료제조업자의 공병보조금 환불제도홍보 및 교육의무, 청량음료제조업자의 공병보증금환불제도 홍보물 확인, 청량음료제조영업자의 공병회수제도 홍보실적 및 계획 제출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폐지하고 일부 사항은 고시사항(보건복지부고시1999-4호)으로 하였으며, 제품검사와 관련되는 폐지규정으로서는 인삼제품 사전검사(법 제13조, 영제3조), 식품첨가물 사전제품검사(법 제13조, 영3조)등이 폐지됨에 따라서 식품첨가물의

제품검사수수료 부과(법 제13조규칙7조) 인삼 제품류의 제품검사 수수료부과(법 제13조 규칙 제7조), 제품검사의 표시(법 제14조, 규칙 제10조)등 관련조항도 폐지된다. 신고대상영업의 처리기간 규정(법 제22조 및 규칙 제29조, 별지 25호 서식), 음식점영업자중 자격 소지자에 대한 사전위생교육(법 제27조, 규칙37조의2), 식품위생 감시 단속권 일원화 (풍속영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미성년자 주류 제공 및 고용금지연령(법 제31조, 및 규칙 제40조 별표 12), 휴게 음식점 영업소내의 주류반입 및 보관 금지(법 제31조 및 규칙40조 별표 12), 식품접객업의 조리장, 객석의 변경 허가(시행 규칙 제23조), 시설무단 멸실에 의한 허가 취소시 일정기간 동일업종허가 제한(법 제24조), 식품 등의 취급시 의무(법3조, 규칙 제2조), 조건부 영업허가(법 제23조, 영 제14조, 규칙 제30조, 제31조), 조합(협회, 연구원)정관 승인(법 제46조, 규칙 제51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사항 변경범위(규칙 22조1항, 제23조1항), 식품 위생업 소 영업허가 신청(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제22조), 영업행위의제한, (식품위생법 제30조), 식품제조 가공업 등의 작업장에 조명도 기준설정, (규칙 20조 별표9), 불합격품의 판매금지(법 제15조), 포장용기 파손 식품의 판매금지(규칙 제42조 별표 13) 56개의 법 조항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될 예정이다.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규격(식품위생법 제7조 시행규칙 제4조)은 투명성이 없어 폐지를 할 예정이었으나 식품개발을 위한 절차를 간편 신속히 할 필요가 있어 존치하도록 하였다. 식품의약품 안전 청의 관련고시 사항에 대한 폐지는 34건으로 수입식품 등 검사처리 지침(청 훈령 제6호)의 수입식품 검사내용확인 (제4조), 수입식품 정밀검사기준 및 규격 항목의 적용(제5조), 수입식품 동일사 동일식품 등의 서류검사 적용배제(제8조) 등은 법령 규정 중복규정으로 폐지하였으며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기준(청 훈령98-3)은 식품위생기관의 지정 신청 (제3조), 식품위생 검사기관 업무규정 승인(제4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사업계획서 보고(제6조)식

품위생검사기관의 소재지 변경(제7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업무 및 회계감사(제9조)등 업계의 부담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였으며, 자가품질검사 업무처리 지침(청훈령98-5)에 의한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대상업종(제3조), 식품의 자가품질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제4조3항), 식품의 자가품질 위탁검사의 범위(제5조), 식품의 자가품질 검사의뢰 및 검체 채취 등(제6조), 식품의 자가품질검사결과통보 (제7조), 식품의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품의 처리(제8조 제2항), 식품자가품질 검사기관 지정 신청 대상(제9조), 식품의 자가품질검사기관신청 및 지정(제11조),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업무운영 규정제정 등(제12조), 자가품질 검사의 정도관리 (제15조)등이 불필요하거나 진입 제한적 규제임으로 폐지하였으며 식품위생공무원이 아닌 자에 의한 검체 채취 규정(청훈령)에 있어서는 검체 채취 대상(제3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평균 부적합율 승인(제6조), 식품위생관리인의 검체 채취방법 등(제7조)으로 별도 규정으로 불필요하고 법령과 중복됨으로 폐지하였다. 식품연질캡슐 성형 위탁업소 지정규정(복지부고시90-31)에서 위탁업소 지정기준, 위탁업소에 위생관리인 배치 등 별도의 지정이 불필요함으로 폐지하였으며, 국내외 공인 검사기관과 검사증명서 인증기준 및 절차(청고시 98-7)에서는 공인 검사 기관의 소재지 변경(제3조), 수출국 정부의 협조(제5조)등은 당사국간의 협약 사항으로 실효성이 희박하여 폐지하였으며 녹색신고 등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청고시98-36)은 녹색신고제도의 기본원칙(제2장), 성실신고자의 지정 및 절차(제4장), 성실신고자에 대한 우대조치 (제5장), 성실신고자 자정취소 및 해제(제6장)등의 관련 규제는 상위법의 폐지와 우대설익이 없는 사항으로 폐지하였다. 고추장 수입 승인요령(복지부공고 제97-14호)은 국내 고추생산농가 및 고추장제조업체 보호목적의 한시적 운영규정으로 하여 2000년에 존속기한이 만료됨과 동시에 폐지된다. 식품 등의 기준·규격(식품공전, 청고시 98-58)은 식품별 원료의 구비요건,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 냉면 육

수에 대한 미생물 권장 규격, 접객용 음용수, 개숫물 조리용구 등의 미생물 권장규격 등은 유통기한의 자율화에 대응하고 자율권장 신청사항임으로 폐지하여 자율사항으로 하였다.

3.2 개선되는 규제

식품위생법에서 개선되는 규제는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에 있어 허위표시, 과대광고의 금지(규칙 제6조 및 별표3)에서는 유용성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지나친 영업행위의 제한(법 제30조)을 복지부로 환수하여 일부완화로 개선하였다. 자가품질검사의 의무(법 제19조 및 규칙 제19조, 별표8)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등에 대하여는 자가품질검사를 면제 하도록 개선하였다. 식품접객영업의 허가(법 제22조 및 영 제9조)에 있어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허가)중 허가의 필요성이 낮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하고 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허가(법 제22조 및 규칙 24조의 2 별표11)도 신고제로 개선하였다. 식품접객 영업자의 영업 허가 제한 (법 제24조)에 있어서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2년간 동종의 영업허가를 제한하였으나 1년으로 제한하여 개선하고 식품운반 판매업자의 위생교육(법 제27조, 규칙 37조의2)을 매년 4시간씩 하도록 하였던 것을 기존 영업자는 3년마다 4시간 위생교육을 하도록 개선하고(자동판매기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포함) 위생교육의 상호 인정범위(법 제27조, 규칙 제37조의2)는 2년 이내 동일업종으로 변경시에는 위생교육을 면제하였던 것을 동일업종에서 유사업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업종별 시설기준(법 제21조 규칙 제20조 별표9) 불필요한 시설기준은 정비 개선하였다. 제품검사(식품위생법 제13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7조)를 받아야하는 인삼제품류와 건강보조식품 등의 검사를 인삼제품류의 검사는 폐지하고 건강보

조식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유통기한의 규정 및 설정(법 제7조, 제31조, 규칙 제40조 별표12)에 있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판매는 금지하도록 하고 기한설정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하였다. 식품접객영업의 미성년자 접객 원 고용시 처분기준(법 제55조 내지 59조 규칙 제53조 별표15)에서 과징금 처분을 제외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행정처분기준이 불합리한 것은 합리적으로 조정 개선하였으며 수입식품신고 및 검사제도(법 제16조, 규칙 제11조)수입식품 등 검사기간(법 제16조, 규칙 제11조)에 있어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수입신고의 허용과 신속검사 대상식품의 조정 및 검사기간을 18일에서 15일로 단축 조정하는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식품 등의 표시기준(법 제10조,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제98-5호)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표시기준을 정비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수질검사제도(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의 수질검사항목45개 전 항목검사를 8개 검사항목으로 축소하고 식품진흥기금 관리제도(법제71조)의 진흥기금을 시·도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군·구도 설치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식품위생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삭제하여 식품접객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법 제31조, 규칙42조)을 완화하였으며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법 제29조, 규칙 제41조)를 반기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1년에 한번 보고하도록 변경하고 지하수 사용 영업자의 영업허가신청시 수질검사성적서 제출의무(영 제10조, 규칙 제22조)를 식품의 원료배합수로 사용하는 영업자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개선, 조리사·영양사의 결격사유(법제 38조)중 정신 지체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며, 조리사·영양사 보수교육 의무(법 제40조, 규칙 제49조, 제50조)에서 보수 교육시간을 단축하고 식품위생교육 지침(예규10호)에서 수강료·교육계획 등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제를 보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개선을 하였다.

식품관련영업의 허가(법 제22조, 제23조, 영 제9조내지 제14조, 영 제9조, 내지 14조, 규칙

제22조, 23조, 제27조, 제28조)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하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하였다. 식품생산시 허가기관에 제출하는 품목 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2항, 별지20, 24호서식)에서 배합비율은 제외로 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소분 판매금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의 범위(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는 인정품목을 확대하고 조건부영업허가제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4조)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개선 되어진다. 공병보증금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청량음료 제조업자의 공병보조금 환불시정 및 결과통지 의무는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토록 환경부에 이관한다. 기타 세부적인 개선 및 존치 규제에 대하여 요약하면 표와 같다.

3.3 존치되는 규제들

식품위생 분야에 있어서 존치되는 규제는 유통종사자의 범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법 제4조, 규칙 제2조의 2), 병육 등의 판매 금지(법 제5조, 규칙 제2조의2),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금지(제6조), 식품첨가물과 기구, 용기 및 포장의 기준 규격고시(법 제7조, 법 제9조, 법 제12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금지(법 제8조), 불불합격품 등의 판매금지(법 제15조), 출입 검사, 수거 등(법 제17조, 규칙 제12조내지 제15조), 영업 등의 승계신고(법 제 25조, 규칙 제 33조)식품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법 제29조, 규칙 제40조), 동업자조합설립 인가(법 제44조, 영 제28조, 제29조)시정명령(법 제55조), 폐기처분(법 제56조, 규칙 제52조), 영업자에 대한 시설개수명령(법 제57조 제1항), 영업허가 등의 취소(법 제58조, 법 제59조, 영 제36조, 규칙 제53조, 제54조, 제55조),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법 제60조), 행정제재

처분효과의 승계(법 제61조), 영업장의 폐쇄조치(법 제62조), 조리사, 영양사 면허취소(법 제63조, 규칙 48조),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5조, 영 제38조, 제39조, 규칙 제56조, 법 제74조내지 제77조, 법 제78조, 영 제54조, 규칙 제56조),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법 제67조, 영 제40조, 제41조, 규칙 제57조),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법 제69조, 영 제2조, 규칙 제58조) 식품등의 자진회수(법 제31조의2)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법 제32조의2), 위해식품등의 공표(법 제56조의2, 영 제34조), 식품영업 허가제한(고시(98-12호), 광고 사전심의 고시(97-9호), 수입식품 등의 신고등(법 제16조, 규칙 제1조), 영업의 신고 대상 업종(법 제22조, 영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규칙 제22조, 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건강 진단법(제26조, 규칙34조, 제35조), 위생교육(법 제27조, 규칙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3), 조리사, 영양사의 면허(법 제36조, 제27조, 규칙 제46조, 47조), 수수료(법 제73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영양사에 관한 규칙 제5조), 면허의 재교부신청(영양사에 관한 규칙 제13조), 면허증의 반납(영양사에 관한 규칙 제14조), 식품관련 품목의 제조정지 등(식품위생법 제59조, 시행규칙 제53조 및 55조)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품목제조보고(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5조), 식품진흥기금을 취급하는 지정금

융기관의 과징금 수납영수보고(법 제71조),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은자에 대한 보고(법 제71조) 등 40건의 규제가 존치된다

4. 결언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제 총1703건 중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규제는 총129건으로 폐지되는 규제가 57건이며 보건복지분야의 규제 폐지 평균 50%의 수준에 미달하는 44.2%이었으며 개선되어지는 규제는 32건 그리고 원래대로 존치되는 규제는 40건이다.

식품위생분야의 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되는 사회적 규제로 편의의 분석평가가 용이하지 않음으로 규제 폐지에 대한 개혁의 저항성이 매우 높았었다. 특히 식품 위생분야에 있어서는 규제의 개혁이 국민의 건강을 포기한다는 거센 반발의 소리도 높았다. 그러나 식품위생분야의 개혁은 고질적인 부조리의 제거를 위해 투명하지 못한 규제, 사회적 발전에 따라 법적인 실효성이 없는 규제, 그리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한하거나 자율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불필요하거나 다른 규제로서 가능할 수 있는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하고 취약계층이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의 규제만 존치하도록 하였다.

식품위생법의 내용별 요약 (보건정책국 약무식품정책과)

대상 법규명	규제내용	'98 확정결과	연구기관 검토결과	부처의견
허위표시·과대광고의 금지	○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의 유용성 표현에 있어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범위 규정	개선	〈민간연구기관〉- 개선 유용성 허용범위를 명확히 규정 〈공공연구기관〉- 개선 사전광고 심의제와의 중복성이 존재함으로 사전광고 심의제와의 통합이 필요 〈민간연구기관〉- 개선	○ 개선 - 민간연구기관 의견대로 연구사업추진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개선코자 함

대상 범규명	규제내용	'98 확정결과	연구기관 검토결과	부처의견
영업행위의 제한	○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행위 제한	개선	시도위임업무를 복지부로 환수하여 지나친 영업제한 완화 <공공연구기관>- 존치 <민간연구기관>- 개선	○ 개정완료 - 민간연구기관 의견대로 '98. 9. 14 개정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기가 제조하는 식품등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개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면제 <공공연구기관>- 존치	○ 개선 - 과자류, 면류 김치류등 위생상 문제 가 없는 식품에 대하여 검사의무 면제
식품접객영업의 허가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허가	개선	<민간연구기관>- 개선 개선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제 → 신고제 <공공연구기관>- 존치	○ 개선 - 민간연구기관 검토의견 대로 개정추진중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허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	개선	<민간연구기관>- 개선 허가제 → 신고제 <공공연구기관>- 존치	○ 개선 - 민간연구기관 검토의 견대로 개정중
식품접객 영업자의 영업허가 제한	○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2년간 동종의 영업허가 제한	개선	<민간연구기관>- 개선 영업허가 제한을 2년 → 1년 <공공연구기관>- 개선 대리인을 이용한 불법영업이 지속적으로 잔존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 처가 필요함. 따라서 불법 영업자에 대 해서는 동종의 영업허가를 2년으로 제한 하고 영업허가시 자금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영업을 근원적으로 제한함 <민간연구기관>- 개선	○ 개선 - 민간연구기관 의견대로 개정중(국회계류중)
식품운반·판매업자의 위생 교육	○ 식품운반, 판매업소의 영업자에 대한 매년 4시간 위생교육 실시	개선	신규교육만 존치하고 보수교육은 폐지 <공공연구기관>- 존치	○ 개선 - 기존영업자는 3년마다 4시간으로 개선
자동판매기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 자동판매기영업자에 대해 매년 4시 간씩 위생교육 실시	개선	<민간연구기관>- 개선 ○ 신규교육만 조치, 보수교육 폐지 <공공연구기관>- 존치	○ 개정완료 - 민간연구기관 의견대로 '98. 10. 19 개정
위생교육의 상호 인정범위	○ 2년이내 동일업종으로 변경시에는 위생교육 면제	개선	<민간연구기관> ○ 개선 유사업종으로 변경시 위생교육면제 <공공연구기관>- 존치	○ 개정완료 - 민간연구기관 의견대로 '98. 10. 19 개정

대상 법규명	규제내용	'98 확정결과	연구기관 검토결과	부처의견
업종별시설기준	○허가 및 신고대상 영업에 대한 업종별 공통시설기준 및 세부시설 기준을 규정		〈민간연구기관〉- 개선 시설기준 정비개선 〈공공연구기관〉- 존치	○개선 -민간연구기관 의견대로 개정추진중
조리사 및 영양사 의무 고용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영업자는 조리사를 두어야하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함.	개선	〈민간연구기관〉- 개선 〈공공연구기관〉- 개선	○개선
유통기한의 규정 및 설정	○현재의 유통기한은 판매기한으로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판매금지	개선	〈민간연구기관〉- 개선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후 개선 필요 〈공공연구기관〉- 존치	○개선 - 안전성문제가 적은 제품에 대하여 품질유지 기한등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안전청과 협의 후 단계적으로 개선
식품접객영업의 미성년 자접객원 고용시 처분 기준 강화	○식품접객업영업의 미성년자 유흥접객원고용시 과징금처분가능	개선	〈민간연구기관〉- 개선 과징금처분에서 제외후 처벌강화 〈공공연구기관〉- 존치	○개선 -청소년을 유흥접객원 고용시 1차 허가 취소하도록 처벌강화
수입식품신고 및 검사 제도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되는 식품을 수입하기위한 수입신고 및 검사	개선	〈민간연구기관〉- 개선 전자 문서에 의한 수입신고허용, 신속검사대상 수입식품조정 〈공공연구기관〉- 존치	○개정완료 (민간연구기관의견) - 98.10.19개정
수입식품등 정밀검사 기간	○정밀검사 처리기간을 18일로 규정	개선 개선	〈민간연구기관〉- 개선 18일→15일(통조림 등 일부품목제외) 〈공공연구기관〉- 개선 식품의 안전성측면에서는 철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지만 식품정밀검사기간이 통상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검사기간을 단축시킬 기술적인 방안 필요	○개선 - 민간연구기관 의견대로 개정중
식품등의 표시기준	○표시를 하여야할 대상 식품, 방법 및 세부표시기준	개선	〈민간연구기관〉- 개선 검사항목 45개 → 8개 〈공공연구기관〉- 존치	○개정완료 - '99.2.18 (식약청고심 제99-15호)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수질검사제도	○지하수사용업소의 경우 먹는물수질 검사기준에 의한 45개 전항목 검사	개선	〈민간연구기관〉- 개선 안전청 시군구도 설치가능 〈공공연구기관〉- 개선	○개정완료 (민간연구기관의견) - '98.10.19 개정
식품진흥기금 관리제도	○진흥기금은 시·도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개선	실질적인 운용권자인 시도지사가 조례를 정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확대 운용도록 하여 진흥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이 기대됨	○개선(국회계류중) -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대상 법규명	규제내용	'98 화정결과	연구기관 검토결과	부처의견
식품접객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	개선	<민간연구기관>- 개선 식품위생과 관련없는 사항삭제 <공공연구기관>- 존치	○개선 - 풍속에 관한 사항등 식 품위생과 관련이 없는 타법 소관사항을 삭제 함에 있어 국무조정실 과 협의후 결정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류 제조정지, 허가취소, 업소폐쇄, 당해제품 폐기등) ○영업정지 등에 갈음한 과징금처분 가능	개선	<민간연구기관>- 개선 식품위생과 관련없는 사항삭제 <공공연구기관>- 존치	○개선 - 민간연구기관 의견대로 개정추진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 산실적보고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의 생산실적 등을 허가관청에 보고	개선	<민간연구기관>- 개선 보고주기를 반기 → 년 <공공연구기관>- 존치	○개정완료 (민간연구기관 의견) '98.10.19
조리사·영양사의 결격 사유	○조리사·영양사의 결격사유(정신질 환자, 전염병환자, 약물중독자, 정신 지체인)	개선	<민간연구기관>- 개선 정신지체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 <공공연구기관>- 존치	○개선 - 민간연구기관의견 대로 개정 추진중 (국회계류중)
식품위생교육지침 지하수사용영업자의영 업허가신청시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의무	○식품위생 교육과목 및 세부절차 ○수강료·교육계획등을 복지부장관이 승인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영업자의 영업허가 신청시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지하수를 식품의 원료 로 사용하지 않는 영업자까지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함)	개선 개선	<민간연구기관>- 개선 승인제 → 보고제 <공공연구기관>- 존치 <민간연구기관>- 개선 식품의 원료(배합수)로 사용 하는 영업 자에 한하여 제출 <공공연구기관>- 존치	○개정완료 ○개선 - 민간연구기관 의견대로 개정추진중
식품관련 영업의허가	○식품영업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함	개선	<민간연구기관>- 개선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허가제 → 신고제 <공공연구기관>- 존치	○개선 - 민간연구기관의 의견대로 개정추진중
위생교육	○위생교육의 대상자, 기관, 시간, 교재 등	개선	<민간연구기관>- 개선 신규교육 존치, 보수교육 폐지 <공공연구기관>- 개선 식품정책의 변화 및 유해요소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후 보수교육 필요	○개선 - 교육시간 조정하여 개 정추진중

대상 법규명	규제내용	'98 확정결과	연구기관 검토결과	부처의견
병보증금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준수	○식품제조·가공·판매영업자는 청량 음료등 용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공병보증 금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함	개선	〈민간연구기관〉- 개선 환경부로 이관 〈공공연구기관〉- 개선	○개선 - 환경부 이관
청량음료제조영업자의 공병보증금환불시정 및 결과통지의무	○청량음료 제조영업자는 소비자가 보 증금을 정당하게 환불하지 않은 판 매업자를 신고하거나 또는 보건복지 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등 행정기관의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고한 소비자 또는 시정지시한 행정기관과 허가권자에 게 통지하여야 함	개선	〈민간연구기관〉- 개선 환경부로 이관 〈공공연구기관〉- 개선	○개선 - 환경부 이관
식품생산시 허가기관에 제출하는 품목제조 보고서	○품목제조 보고서 원재료 또는 성분 배합비율을 허가기관에 제출	개선	〈민간연구기관〉- 개선 배합비율은 조비밀로 보고에서 제외하고 자체 보관 〈공공연구기관〉- 개선 50%가 넘는 주성분 및 우선순위상 1-2 개 주성분만 표기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 보 및 불법제조에 대한 관리유도	○개선 - 민간연구기관 의견제출 개정추진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의 소분판매 금지	○당류, 다류, 건강보조식품 분말제품, 장류등은 소분·판매를 못함	개선	〈민간연구기관〉- 개선 인정품목 확대 〈공공연구기관〉- 존치	○개선 - 민간연구기관 의견제출 개정추진중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의 범위	○즉석제조·가공할수 있는 대상식품 을 정함	개선	〈민간연구기관〉- 개선 인정품목 확대 〈공공연구기관〉- 존치	○개선 - 민간연구기관 의견제출 개정추진중
조건부 영업허가 제도	○단란주점, 유홍주점 영업은 조건부 영업허가가 가능하나, 일반음식점은 조건부 영업허가제도가 없음	개선	〈민간연구기관〉- 개선 일반음식점을 허가제 → 신고제로 개 선함 〈공공연구기관〉- 존치	○개선(국회계류중) - 조건부 영업허가제도 폐지
유홍종사자의 범위 등	○유홍주점업의 유홍종사자의 범위(유 홍접객원, 댄서, 가수 및 악기를 다 루는 자, 무용을 하는 자 등)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개선 - 유홍종사자의 범위를 조정안이 개정추진중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이나 영 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 등의 판매금지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대상 법규명	규제내용	'98 확정결과	연구기관 검토결과	부처의견
병육 등의 판매등 금지	○ 질병에 걸렸거나 그 염려가 있는 동물의 고기 등은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가공·조리 등 금지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금지 (법 제6조)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식품의 판매·제조·가공 등 금지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기구·용기 및 포장의 기준·규격고시 (법 제7조, 제9조, 제12조)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고시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유독기구 등의 판매 사용금지 (법 제8조)	○ 유해물질이 함유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기구·용기·포장 등은 영업상 사용금지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불합격제품의 판매 등 금지(법 제15조)	○ 불합격제품 또는 합격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금지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출입·검사·수거 등 (법 제17조, 규칙 제12조 내지 제15조)	○ 영업장소 등에 출입·검사·무상수거·서류열람 등 - 수거량·수거방법·검사결과 처리방법 등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개선 ○ 무상수거를 견당 유상수거로 개선 - 영업자 보호 및 수거담당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수거제한	존치 ※ 영업장소, 사무소, 창고 등에 출입, 검사, 무상수거, 서류열람 등을 통한 부정·불량 식품의 제조·가공·보관·판매 방지
영업등의 승계신고 (법 제25조, 규칙 제33조)	○ 영업의 양도·합병 등에 따른 승계신고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식품제조가공업자 준수사항(법 제29조, 규칙 제40조)	○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영업자의 준수사항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동업자조합설립인가 (법 제44조, 영 제28조, 제29조)	○ 동업자조합의 설립인가 등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시정명령(법 제55조)	○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시정명령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대상 법규명	규제내용	'98 획정결과	연구기관 검토결과	부처의견
폐기처분(법 제56조, 규칙 제52조)	○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식품 등에 대해 폐기처분 등의 명령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영업자에 대한 시설개수명령(법 제57조 제1항)	○ 적합하지 않은 영업·시설에 대해 시설개수명령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영업허가 등의 취소(법 제58조, 제59조, 영 제36조, 규칙 제53조, 제54조, 제55조)	○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안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취소 - 품목제조정지, 영업소폐쇄등 행정처분기준등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영업허가 등의 취소요청(법 제60조)	○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사안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행정제재 처분효과의 승계(법 제61조)	○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존치	<민간연구기관>- 개선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자와 그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아닐 경우, 행정제재처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소멸되어야 한다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 동규정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으로써 존치 필요
영업장 폐쇄조치(법 제62조)	○ 식품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사안에 따라 그 영업장 폐쇄조치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조리사, 영양사 면허취소(법 제63조, 규칙 제48조)	○ 조리사, 영양사가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명령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법 제65조, 영 제38조, 제39조, 규칙 제56조, 법 제74조 내지 제77조, 법 제78조, 영 제54조, 규칙 제56조)	○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자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과징금 처분 ○ 식품위생법령 위반 자에 대한 벌칙 ○ 식품위생법 위반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식중동에 관한 조사보고(법 제67조, 영 제40조, 제41조, 규칙 제57조)	○ 식중동이 발생한 경우 신고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법 제69조, 영 제2조, 규칙 제58조)	○ 일정규모이상의 집단급식소를 설치한 경우의 신고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대상 법규명	규제내용	'98 확정결과	연구기관 검토결과	부처의견
식품 등의 자진회수 (법 제31조의2)	○식품등으로 인한 위해 발생시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진회수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법 제32조의2)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위해식품 등의 공표 (법 제56조의2, 영 제3)	○위해가 발생한 식품에 대해 위해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식품영업허가제한 (고시(98-12))	○영업허가 제한 대상업종 및 제한방법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광고사전 심의고시 (97-9호)	○광고사전심의대상식품 및 광고매체에 관한 지침	존치	<민간연구기관>-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수입식품등의 신고 등 (법 제16조, 규칙 제1)1조	○식품 등의 수입시 관련 절차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영업의 신고대상업종 (법 제22조, 영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규칙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영업의 종류별로 영업 허가·신고 업종 - 품목제조보고사항, 영업 허가신청서류 및 절차, 허가사항변경, 신고사항 변경 등의 보고	존치	<민간연구기관>- 개선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 - 규칙 제22조의 먹는물 수질검사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시에만 검사도록 함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허가 및 변경등에 필요한 제반서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존치 필요
건강진단 (법 제26조, 규칙 제34조, 제35조)	○건강진단 대상자 및 규제할 질병의 종류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조리사·영양사의 면허 (법 제36조, 제27조, 규칙 제46조, 제47조)	○조리사·영양사의 면허 자격절차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개선	존치
수수료 (식품위생법 제 73조)	○허가·면허·신고를 할 경우 수수료 부과	존치	○허가·면허·신고시 1회받는 수수료를 매년 혹은 일정주기별 갱신하도록 하여 갱신시마다 수수료를 받도록 개선 <민간연구기관>- 존치	존치 ※ 최소한의 실경비 징수 필요
식품진홍기금을 취급하는 지정 금융기관의 과징금 수납영수 보고 (식품위생법 제71조)	○식품진홍기금을 취급하는 지정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는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체없이 영수 보고를 하여야 함.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대상 법규명	규제내용	'98 확정결과	연구기관 검토결과	부처의견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은 자에 대한 보고, 조사 (식품위생법 제71조)	○ 시·도지사는 식품진흥기금을 지원·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음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영업의 신고대상업종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생산자단체 식품제조·가공영업은 영업신고하여야 함.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식품위생법 제7조, 시행규칙 제4조)	○ 식약청장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제조자 등으로 하여금 제조·가공·사용 방법등에 관한 기준·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당해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 등은 개별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천연첨가물에 한함			
식품위생관련 영업자 등의 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제27, 동법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의3)	○ 식품제조·가공영업자 등 식품관련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영업에 종사하여야 함.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혐오식품의 조리·판매 금지 (식품위생법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 식품접객업소는 혐오식품을 조리·판매금지	존치	<민간연구기관>- 존치 <공공연구기관>- 존치	존치

참 고 문 헌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자체 규제 정비 계획안(1988)

2. 보건복지부: 세계화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제도 개혁과제 심사분석 편람 (1996)
3. 규제개혁위원회: '98 보건복지부 규제 정비계획 심사조정안 (1998)
4. 이필도, 이현송, 배화옥: 가정의례의 경제적

- 비용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5. 규제개혁위원회: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 규제개혁이 만들어 갑니다 (1999)
6.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조정관: 국민의 정부 첫 해 규제개혁의 성과 (1998)
7. 규제연구회: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 (1998)
8.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 백서 (1999)
9. 한국식품공업협회: 식품위생법 (1999)
10. 규제개혁위원회: 제3차 규제개혁 연찬회 교재 (1998)
11. 최병선: 우리나라 규제개혁 연찬회 교재 (1998)
12. 최병선: 부정부패와 정부규제,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원, 5(4) (1997)
13. 김유찬: 규제개혁과 소비자 보호, 한국소비자 보호원 (1998)
14. 김성천: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개혁, 한국소비자보호원 (1998)
15. Fujisawara Kunisato: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 식품위생법, 합동출판사 (1996)
16. Peter Barton Hutt: A guide to the FDA modernization Act of 1997, *Food Technol.* 52(2)(1998)